

우체국 하도급지킴이통장 특약

제1조 【적용범위】

‘우체국 하도급지킴이통장’(이하 ‘이 예금’이라 한다)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‘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’ 및 ‘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조 【예금종류】

이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다.

제3조 【가입대상】

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법인, 개인사업자, 고유번호(또는 납세번호)를 부여받은 단체이다.

제4조 【가입 및 해지】

이 예금의 가입 및 해지는 우체국 창구를 통하여 한다.

제5조 【가입기간】

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제한이 없다.

제6조 【가입금액】

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제한이 없다.

제7조 【거래제한】

이 예금의 출금은 ‘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’의 이체요청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우체국 창구, 인터넷뱅킹, 스마트뱅킹, 폰뱅킹, 자동화기기 등을 통한 출금은 불가하다.

제8조 【적용이율】

- ① 이 예금의 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epostbank.kr) 등에 게시된 이율을 적용하되, 이율이 변동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일자를 기준으로 변동된 이율을 적용한다.
- ② 이 예금의 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, 이율을 바꾼 때에는 그 바뀐 내용을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epostbank.kr)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.

제9조 【이자계산】

- ① 정기이자계산 기준일(결산일)은 매년 3, 6, 9월 셋째 토요일, 12월 말일로 한다.
- ② 이자 계산기간(결산기간)은 최초 예금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(또는 지급일 부터 차기 지급일 전일까지)로 하고 이자계산은 매일의 최종 잔액을 평균 하여 고시된 해당 이율로 셈한다.

제10조 【이자지급방식】

이 예금의 이자는 정기이자계산 기준일 다음날(지급일)에 통장으로 입금된다.

제11조 【우대서비스】

- ① 이 예금은 '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'을 이용하여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경우 발생하는 타행이체수수료를 면제한다.
- ② 이 예금의 우대서비스는 변경될 수 있으며, 시행일 1개월 전에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epostbank.kr)에 게시한다.

제12조 【과세부분】

이 예금은 일반과세로 가입 가능하다.

제13조 【기타】

- ① 이 예금은 계좌대월 약정, 전자통장 약정, 상계, 양도, 담보제공이 불가하다.
- ② 이 예금은 자동이체, 전자금융, 결제성계좌 등 약정이 불가하다.

부 칙

이 특약은 2024년 01월 31일부터 시행한다.